

#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 1. 언론피해의 특징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힘들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보도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체의 속성상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정보도를 해도 일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다.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정보를 했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법에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으며 오로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지만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일반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오보와 정보에 대한 구별과 판단이 어려우며 보도시점에서는 모두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보와 정보의 파급효과는 동일하다.

- 언론에 의한 피해는 계량화하기 힘들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피해는 물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만 이것을 물질적으로 책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정신지향적 가치사회에서는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체계가 형성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물질적 보상'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 언론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동시다발적이다.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너도나도 신문, 방송이 동시에 보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하소연할 방법도 기회도 없게 된다. 중앙, 지방 언론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 반론권을 매체마다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엄격한 법의 집행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요원한 문제다. 최근 일본에서는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더라도 그 책임을 스포츠지에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예상된다.

○ 법적 피해보상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민사소송법상 잘못된 보도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배상액수가 미미한 편이라 실익이 없는 편이다. 언론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언론사에 항의했다가 자칫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은 언론의 보도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언론보도에 민감하다. 정치인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편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법원에 접수시켰다가 슬그머니 그만 두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이런 공생공사의 관계에서 훗날의 보복이나 보상을 우려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이다.

○ 고위관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피해에 취약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언론보도에 민감했다. 자신의 각료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특히 신문보도를 보고 칭찬도 하고 고함도 쳤다. 따라서 신문의 영향력과 정치력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다. 비판적 보도는 곧 인사조치를 의미했다. 그래서 권언유착이 쉽게 이뤄진 것이다.

○ 언론피해자들은 그 대응에 소극적이다.

일반인들은 법적, 제도적 구제수단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고 또 잘 알아도 현실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병어리 냉가슴 앓는 식이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은 언론의 잘못된 피해를 보고도 앞날을 위해 또한 조직을 위해 참거나 타협하는 식이었다. 이런 현상이 언론보도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오지 못했고 성실한 취재보도 관행을 만들지 못했다.